

인천·부산 등 긴급한 경·공매 유예·정지 협조요청 건 242건 원안의결

-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차회의 개최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이 공포·시행되는 6월 1일(목) 오후 위원회 발족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천·부산 등 긴급한 경·공매 유예·정지 협조요청 안건 등 의결안건 2개를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.

□ 금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한 안건은 총 3개로, 보고안건으로는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과, 의결안건으로는 ②위원회 운영계획안과 ③긴급한 경·공매 유예·정지를 위해 인천·부산 등 지자체가 사전에 접수한 242건에 대한 협조요청이다.

* (보고안건) 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
(의결안건) 위원회 운영계획안, 인천·부산 등 긴급한 경·공매 유예·정지 협조요청

□ 한편,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795건(금일 17시 기준, 사전접수건 포함)에 대하여는 6.7(수)부터 매주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순서대로 개최하여 긴급한 경·공매 유예·정지 협조요청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.

○ 특히, 금일 의결된 242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(182건) 및 부산지방법원(60건)에 3개월간 경·공매 유예·정지를 즉시 협조요청 할 예정이다.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서 심의·의결에 속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	책임자	과 장 이장원 (044-201-3321)
		담당자	사무관 문수빈 (044-201-4150)



□ 추진배경

- (지자체)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일정기간(60일 이내)이 소요됨에 따라 피해물건의 경·공매 낙찰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인천·부산은 경·공매 유예·정지가 시급한 임차인 대상 사전접수 진행
- (국토부) 6월 1일 특별법 시행 후 인천·부산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 접수 결과를 검토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건에 대하여 안건 상정
 - 인천·부산은 인명사고 등 심각한 피해로 지자체 차원의 전세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어 전세사기피해 여부의 신속한 검토 가능

□ 사전접수 및 의결 결과

-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전 접수 건 중 매각기일이 도래(배당요구 종기 경과)하는 인천^{미추홀구} 182건 및 부산^{진구} 60건을 경·공매 유예·정지 협조 요청 의결

□ 향후 조치계획

- (법원 협조) 국토부는 경·공매 유예·정지 의결을 받은 인천 182건, 부산 60건에 대하여 각각 인천지방법원, 부산지방법원에 협조 요청
- (피해자등 결정) 사전접수 건 중 매각기일 미도래(배당요구 종기 미경과) 등 경매절차 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가능한 건은 향후 조속히 의결
 -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지자체 피해접수 또한 조속히 심의·의결하도록 적극 조치